

창원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가단4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2. 3.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원고는 이 법원 2021. 2. 3.자 3차 변론기일에서 위 목록 중
순번 8. 컨테이너 3대 중 2대 분과 순번 10. 호이스트는 각 일부 취하함)에 관하여 2017. 4.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라.

이 유

1. 소외 E(F 운영자)가 2016. 8. 20.경까지 D(피고 회사의 전신인 개인사업체 G의 운영자)과 물품거래를 하였고 E는 D으로부터 못 받은 물품대금 24,815,565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2767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인용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9. 1.경 E로부터 D에 대한 위 지급명령부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위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도 부여받은 사람인 사실은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채무자인 D이 그 채무이행을 면탈하려고 배우자인 피고회사의 대표자 H에게 2017. 4. 25.자로 G의 기계등 집기 일체를 포함하여 양도하였고 동일자로 H는 G이라는 개인사업체를 법인화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이는 D의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는 D의 채권자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D이 사해행위로 한 피고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피고회사의 대표자가 D의 배우자이고, 피고회사의 전신이 G이며 별지목록 기재 동산들이 G 사업장에 공여된 동산들임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동산들에 관하여 D이 피고회사에게 증여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반면, 을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양수금채무와 같은 물품대금채무 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도 체불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그 체불임금 사건이 수사중인 사실, 이 사건 동산들은 위 임금채권자들 중 소외 I(2007~2018년까지 11년 근무), C(2015~2018년까지 3년 근무)이 D으로부터 대물변제방식으로 각자 나누어(I이 2, 5, 6, 7을 C이 순번 1, 2, 3, 4를)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들을 D으로부터 권리이전받은 사람이 피고 회사가 아닌 이상, 피고 회사를 상대로 취소를 구할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사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이 사건 동산들을 대물변제로 수령한 I, C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권한이 있는 채권들로서 일반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채권도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예지희

채무자의 동산 목록

소재지 ; 김해시

순 번	동 산 명	제 작 회 사	수 량
1.	선 반 기		1 대
2.	라디알 드릴기		1 대
3.	씨오투 용접기		3 대
4.	프리즈마 절단기		1 대
5.	밀링기		1 대
6.	밴드쇼우기		1 대
7.	알콘 용접기		1 대
8.	콘테이너 (3 X 4)		3 대
9.	컴퓨터 (프린트기 포 함)		1 대
10.	호이스트 (28T)		1 대
11.	드릴기		2 대

위 동산 목록 외에도 여러 개가 있으나 채무자 의 과격한 저지
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